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2022. 10. 15

[주] 아 즈 텍

목 차

1. 개요	1
2. 중대산업재해 대응체계	3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상황 보고 절차	4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절차	5
□ 중대산업재해대책본부 조직 · 운영	6
□ 비상연락처	7
[서식]	
[1] 중대산업재해 발생 보고서	11
[2-1] 산업재해조사표 (서식)	12
[2-2] 산업재해 재발방지 계획서 서식 및 예시	15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1

개요

- (목적)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긴급 상황 대처를 위한 체계적인 매뉴얼 마련으로 피해 최소화
- (근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8호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호〉

-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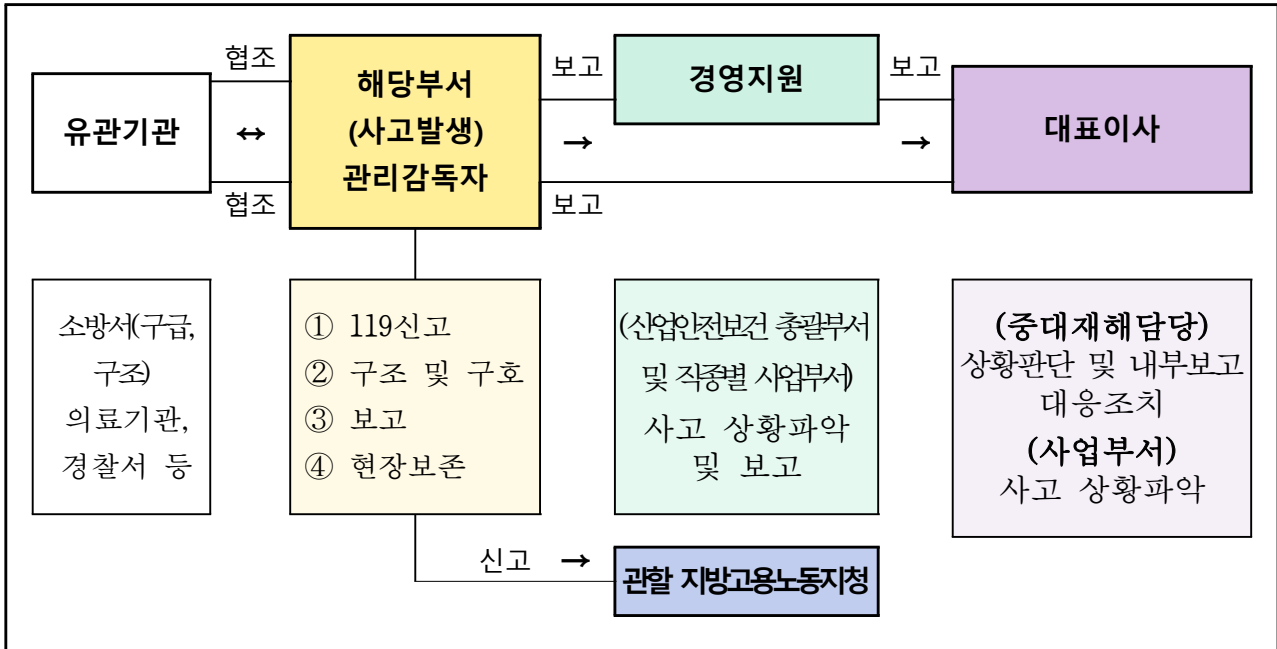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재해

- ① 사망자 1명 이상
-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상황 보고 절차



○ 보고 방법

- (1차) 긴급구조·구호 실시 후 유선보고
- (2차) 서식 작성 후 공문 보고
 - [서식1] 중대재해발생보고서 작성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보고 (즉시보고)
 - [서식2-1]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보고(1개월 이내)
 - [서식2-2] 산업재해 재발방지 계획서는 산업재해조사표와 같이 작성·보관

○ 보고 대상

-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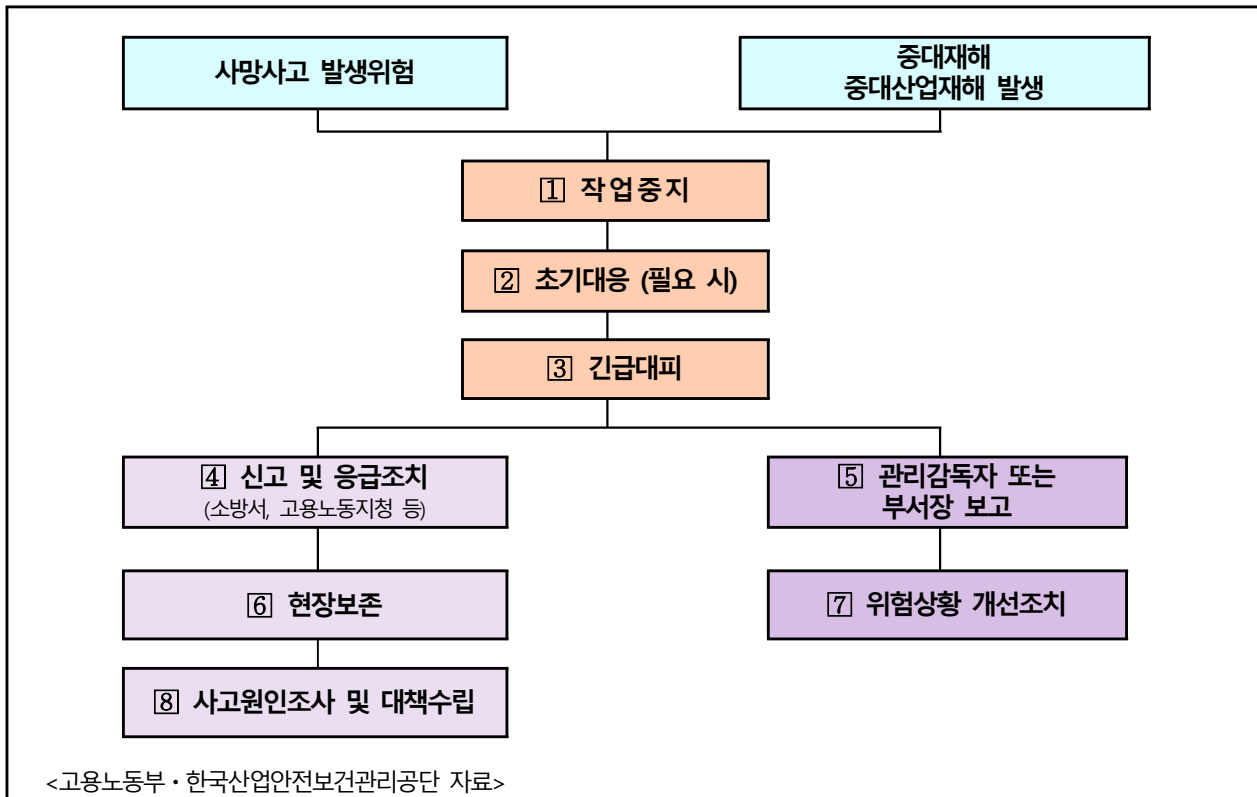
-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절차

○ 대비 단계 (평상시): 작업 전 준비사항 이행

- 위험요인 파악 및 인지, 안전보건 예방조치
- 안전장비 보유현황 및 안전시설물 점검 등
- 응급조치 장비 준비상태 점검

○ 대응 단계 (발생시): 중대산업재해 또는 급박한 위험 발생 시 대응 절차 이행



1 | 작업중지

- 즉시 작업중지, 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큰소리로 상황 전파

작업중지 지시 또는 근로자(수급인의 근로자 포함) 작업중지권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 ②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관리감독자 등은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초기대응(필요 시)

(감전) 즉시 전원 차단, 통전 차단 확인
(질식) 작업중지,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대피
(화재)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 실시, 진압이 힘들 경우 신속히 대피
(무너짐) 해당 공종의 기계·장비 2차 피해 발생 방지
(기계재해) 재해 발생 시 기계 정지, 2차 피해 발생 방지
(유해물질 누출) 가까운 밸브 차단, 신속한 대피, 호흡기 및 피부 보호
(인화성·산화성 물질 누출) 점화원 발생 억제 조치 및 접촉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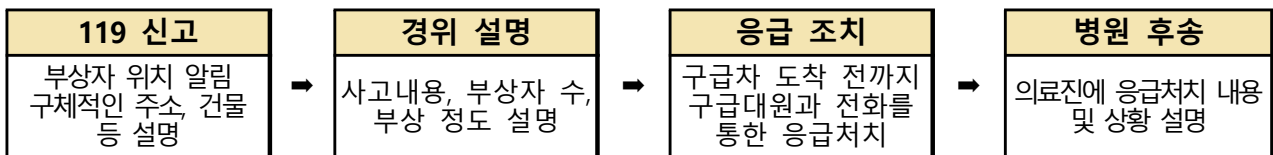
-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위험요인 제거 및 사고장소에 대한 외부인 통제

3 긴급대피

- 근로자는 안전한 장소로 긴급대피

4 119신고 및 응급조치

- 재해자 구급·구조 및 병원 후송 조치(소방서 협조)
- 재해자 상태에 따라 구호 및 응급조치① 기도 유지 ② 심폐소생술 ③ 지혈 안정유지 등
- 119 구급대, 병원 등에 연락하여 긴급 후송



5 관리감독자 또는 부서장 보고

- 사고발생 경위 등 상황과악
- 즉시 비상연락망을 통한 관리감독자 또는 부서장에게 보고
- 즉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재해발생 보고

6 현장보존

-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사고 현장 보존(사진 촬영)

7 위험상황 개선조치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위험상황 개선 조치

8 사고원인 조사 및 대책수립

- 목격자를 통한 사고발생 경위 및 사고원인 조사
- 사고조사 대비 사고발생 당일 작업지시 사항, 안전조치 사항, 교육자료, 점검표 등 안전 관련 자료 준비
- 재해자의 근무공간 및 작업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 위험성평가를 통한 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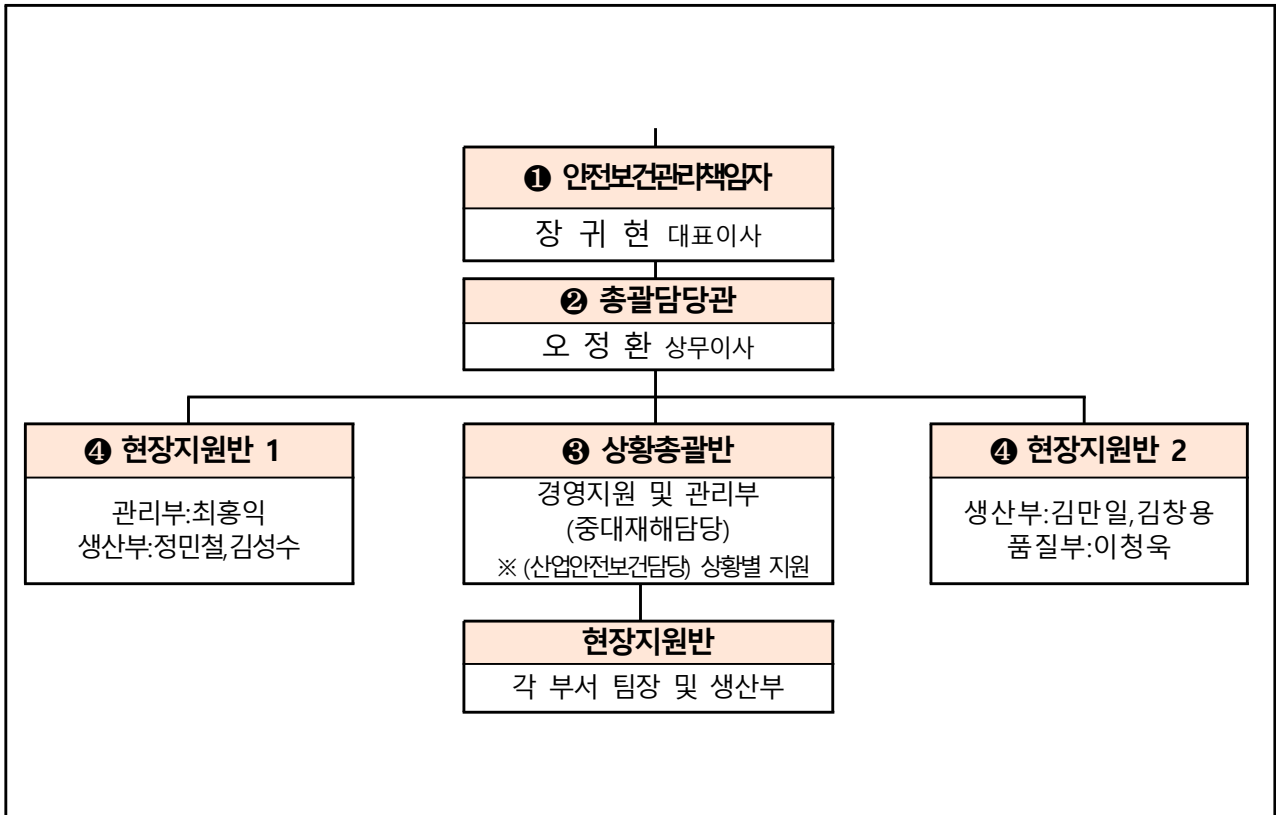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절차

○ (발생기관) 대응 절차

상황별	1단계	2단계	3단계
사고 발생	사고발생 인지 • 상황파악 • 응급처치 및 구호조치 • 주변인에 사고발생 전파 • 작업중지 대피 및 외부인통제	사고발생 신고 • 119신고 및 응급조치 • 비상연락 및 유선보고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에게 즉시 보고)	현장 초동대응 • 2차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 필요시 유관기관 지원 요청 (소방서, 인근 병원 등) • 사고조사 협조
사고 대응	사고 접수 • 사고내용 파악 - 장소, 시간, 사고경위 등 피해상황 - 보호자 연락 • 작업중지 • 사고확대 방지 조치	사고현장 출동 • 현장보존(사진 촬영)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시행	사고발생 보고 • 사고 유선보고 후 서면보고 - 중대재해발생보고서(즉시) (관할지방고용노동청) • 사고 관련 조사서류 구비
사고 수습	사고현장 통제 • 통제구역 설정 및 출입 제한 • 사고 상황 파악(조사) • 사고수습을 위한 역할 분담	사고 수습 • 필요시 유관기관 지원 요청 (소방서, 경찰서, 고용노동부 등) • 재해자 가족에 대한 사고처리내용 안내 • 언론 모니터링 및 대응	재발방지 조치 • 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조치사항 이행

□ 중대산업재해대책본부 조직·운영

- (목적)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대책본부 조직·운영
- (기능) 사고의 수습, 지시 전달체계 확립과 사고 관련 대책 수립
- 대응조직체제



○ 대응조직의 주요 역할

대응조직	조치사항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지휘·대응·수습 ▶ 대응활동 조정·지원	▶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② 총괄담당관	▶ 대응조직의 동원과 지휘	▶ 비상사태의 영향파악과 대피상황 결정
③ 상황총괄반 (중대재해담당)	▶ 상황접수 및 보고 ▶ 상황판단 회의 개최, 대응계획 수립 ▶ 안전·보건관리자 사고원인 조사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 유관기관 지원요청 및 협조 ▶ 재발방지대책의 수립과 추진 ▶ 사고수습 진행상황 파악 ▶ 추가피해자 파악 및 이송된 환자 상태 수시 파악, 확인
(산업안전보건담당)	▶ 상황별 지원	
④ 현장지원반 (사업부서)	▶ 환자상태 수시 파악 및 관리 등 (전문기관 연계 심리치료 지원)	▶ 재해 상황 조사 및 대응 지원 ▶ 재발방지대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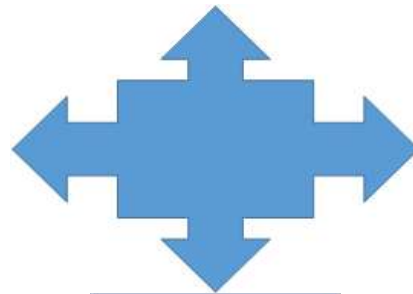
□ 비상연락처

자동차	
김현수	010-2764-2428
김현영	010-4036-8736
개발	
정민철	010-7119-4424
본관	
김만일	010-8820-5268
강성광	010-9622-6657
신관	
찬중	010-5701-8988
박진웅	010-7764-1443
사무실	

관리팀	
황희정	010-8254-6843
최홍익	010-6277-4446
김연숙	010-8782-3508

영업팀	
이남우	010-8214-7706
전상범	010-3193-6682

산업부품팀	
김창용	010-3130-2515
최성균	010-9304-2029



장귀현 / 010-4781-0224

외국인	
메리	010-4819-5735
웅저툰	010-5787-8603

품질	
이청옥	010-9167-2647
측정실	
구병완	010-3567-1140
유지연	010-2228-6971
검사실	
송예정	010-3154-9926
조승래	010-9522-2877

오산소방서	031-8059-7114
	031-8059-7516
화성동부경찰서	182(1566-0112)
한림대동탄 (응급의료센터)	031-8086-2119
삼성본병원	1522-7525
태일전기	010-3725-9532
한국원팩	010-5415-0492

3

행정사항

○ 전부서

- 사고 보고체계(비상연락망) 운영,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철저

서식1 중대재해 발생 보고서

중대재해 발생보고

수 신 :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발 신 :

작성일자: 202 . . . 작 성 자: 직 (성명)

1.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근로 자수		업 종	
------	--	-----	--	-----	--	----------	--	--------	--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경우 수급인 자료 작성

수급자명		대표자		소재지		근로 자수		업 종	
------	--	-----	--	-----	--	----------	--	--------	--

2. 재해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종	입사일자	동종경력	재 해 정 도
					년 월	☐ 사망(명) ☐ 부상(명) (치료예상기간 : 일)

3. 재해발생 내용 및 조치현황

일 시	장 소	발 생 형 태	기 인 물	행 정 조 치
				☐ 시정지시 ☐ 사용중지 ☐ 부분.전면작업중지 ☐ 기타 ☐ 해당없음

4. 재해발생 인지경위

5. 재해발생경위 (육하 원칙)

6. 조치 및 전망

서식2-1 산업재해조사표 (서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 00. 00.>

산업재해조사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I. 사업장 정보	①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②사업장명	③근로자 수			
	④업종	소재지		(-)	
	⑤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		파견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건설업만 작성	발주자	[]민간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⑦원수급 사업장명		공사현장 명			
⑧원수급 사업장 산재 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⑨공사종류					

※ 아래 항목은 재해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같은 재해로 재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로 적습니다.

II. 재해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소			휴대전화	- -
	국적	[]내국인 []외국인 [국적:	⑩체류자격:	⑪직업	
	입사일	년 월 일	⑫같은 종류업무 근속 기간	년 월	
	⑬고용형태	[]상용 []임시 []일용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 []그 밖의 사항 []			
	⑭근무형태	[]정상 []2교대 []3교대 []4교대 []시간제 []그 밖의 사항 []			
⑮상해종류 (질병명)	⑯상해부위 (질병부위)	⑰휴업예상 일수		휴업 []일	
			사망 여부	[] 사망	
III.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⑱재해 발생 개요	발생일시	[]년 []월 []일 []요일 []시 []분		
		발생장소			
		재해 관련 작업유형			
		재해 발생 당시 상황			
IV. ⑳재발 방지 계획	⑲재해발생원인				

※ ㉔재발방지 계획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및 기술지도 등을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는 경
우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 요청 []

※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에 한
정하여 해당 재해자에게 산재보험급여의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니 관련
안내를 받으려는 재해자는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방법 안내를 위한
재해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작성자 성명
작성자 전화번호

작성일
사업주
근로자대표(재해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재해 분류자 기입란
(사업장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발생형태
작업지역·공정

□□□ □□□

기인물
작업내용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 방법

I. 사업장 정보

- ①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재해보상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 가입번호를 적고 사업장등록번호 기입란에는 국세청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재해보상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만 적습니다.
※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은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 ② 사업장명: 재해자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 급여를 받는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파견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휘·명령을 받는 사용자사업주의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예: 아파트를 건설하는 종합건설업의 하수급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자가 실제로 하수급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하수급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 ③ 근로자 수: 사업장의 최근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정규직, 일용직·임시직 근로자, 훈련생 등 포함).
- ④ 업종: 통계청(www.kostat.go.kr)의 통계분류 항목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조하여 세세분류(5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를 알 수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명과 주요 생산품을 추가로 적습니다.
[예: 제철업, 시멘트제조업, 아파트건설업, 공작기계도매업,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업, 중식음식점업, 건축물 일반청소업 등]
- ⑤ 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원도급인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도급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 ⑥ 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사업주의 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파견사업주의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파견사업주의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 ⑦ 원수급 사업장명: 재해자가 소속되거나 관리되고 있는 사업장이 하수급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 ⑧ 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원수급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 ⑨ 공사 종류, 공정률, 공사금액: 수급 받은 단위공사에 대한 현황이 아닌 원수급 사업장의 공사 현황을 적습니다.
가. 공사 종류: 재해 당시 진행 중인 공사 종류를 말합니다. [예: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도로, 공장, 댐, 플랜트시설, 전기공사 등]
나. 공정률: 재해 당시 건설 현장의 공사 진척도로 전체 공정률을 적습니다.(단위공정률이 아님)

II. 재해자 정보

- ⑩ 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체류자격(기호)을 적습니다.(예: E-1, E-7, E-9 등)
- ⑪ 직업: 통계청(www.kostat.go.kr)의 통계분류 항목에서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참조하여 세세분류(5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직업분류 세세분류를 알 수 없는 경우 알고 있는 직업명을 적고, 재해자가 평소 수행하는 주요 업무내용 및 직위를 추가로 적습니다.
[예: 토목감리기술자, 전문간호사, 인사 및 노무사무원, 한식조리사, 철근공, 미장공, 프레스조작원, 선반기조작원, 시내버스 운전원, 건물내부청소원 등]
- ⑫ 같은 종류 업무 근무기간: 과거 다른 회사의 경력부터 현재 경력(동일·유사 업무 근무경력)까지 합하여 적습니다.(질병의 경우 관련 작업근무기간)
- ⑬ 고용형태: 근로자가 사업장 또는 타인과 명시적 또는 내재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 형태를 적습니다.
가. 상용: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나. 임시: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다. 일용: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
라. 자영업자: 혼자 또는 그 동업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사람
마. 무급가족종사자: 사업주의 가족으로 임금을 받지 않는 사람
바. 그 밖의 사항: 교육·훈련생 등
- ⑭ 근무형태: 평소 근로자의 작업 수행시간 등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를 적습니다.
가. 정상: 사업장의 정규 업무 개시시각과 종료시각(통상 오전 9시 전후에 출근하여 오후 6시 전후에 퇴근하는 것) 사이에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2교대, 3교대, 4교대: 격일제근무, 같은 작업에 2개조, 3개조, 4개조로 순환하면서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시간제: 가목의 '정상' 근무형태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당 근무시간보다 짧은 근로시간 동안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라. 그 밖의 사항: 고정적인 심야(야간)근무 등을 말합니다.
- ⑮ 상해종류(질병명): 재해로 발생한 신체적 특성 또는 상해 형태를 적습니다.
[예: 골절, 절단, 타박상, 찰과상, 중독·질식, 화상, 감전, 뇌진탕, 고혈압, 뇌졸중, 피부염, 진폐, 수근관증후군 등]
- ⑯ 상해부위(질병부위): 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신체 부위를 적습니다.
[예: 머리, 눈, 목, 어깨, 팔, 손, 손가락, 등, 척추, 몸통, 다리, 발, 발가락, 전신, 신체내부기관(소화·신경·순환·호흡배설) 등]
※ 상해종류 및 상해부위가 둘 이상이면 상해 정도가 심한 것부터 적습니다.
- ⑰ 휴업예상일수: 재해발생일을 제외한 3일 이상의 결근 등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일수를 적습니다.(추정 시 의사의 진단 소견을 참조)

III. 재해발생정보

- ⑱ 재해발생 개요: 재해원인의 상세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발생일시[년, 월, 일, 요일, 시(24시 기준), 분], 발생 장소(공정 포함), 재해관련 작업유형(누가 어떤 기계·설비를 다루면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재해발생 당시 상황[재해 발생 당시 기계·설비·구조물이나 작업환경 등의 불안정한 상태(예시: 떨어짐, 무너짐 등)와 재해자나 동료 근로자가 어떠한 불안정한 행동(예시: 넘어짐, 가임 등)을 했는지]을 상세히 적습니다.
[작성예시]

발생일시	202 년 00월 00일 0요일 00시 00분
발생장소	사출성형부 플라스틱 용기 생산 1팀 사출공정에서
재해관련 작업유형	재해자 000가 사출성형기 2호기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꺼낸 후 금형을 점검하던 중
재해발생 당시 상황	재해자가 점검중임을 모르던 동료 근로자 000가 사출성형기 조작 스위치를 가동하여 금형 사이에 재해자가 끼어 사망하였음

- ⑲ 재해발생 원인: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재해발생 원인을 인적 요인(무의식 행동, 착오, 피로, 연령, 커뮤니케이션 등), 설비적 요인(기계·설비의 설계상 결함, 방호장치의 불량, 작업표준화의 부족, 점검·정비의 부족 등), 작업·환경적 요인(작업정보의 부적절, 작업자세·동작의 결함, 작업방법의 부적절, 작업환경 조건의 불량 등), 관리적 요인(관리조직의 결함, 규정·매뉴얼의 불비·불철저, 안전교육의 부족, 지도감독의 부족 등)을 적습니다.

IV. 재발방지계획

- ⑳ "19. 재해발생 원인"을 토대로 재발방지 계획을 적습니다.

산업재해 재발방지 계획서						
○ 사업장 개요						
재해자	성명		재해발생 장소		상해종류 (질병명)	
	직업 (직종)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일		상해부위 (질병부위)	
	발생일시	20〇〇년 월 일 ()요일 (시 분)				
발생 개요						
○ 재해발생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재해발생 원인		• 인적 요인(무의식 행동, 착오, 피로, 연령, 커뮤니케이션 등) • 설비적 요인(기계·설비의 설계상 결함, 방호장치의 불량, 작업표준화의 부족, 점검·정비의 부족 등) • 작업·환경적 요인(작업정보의 부적절, 작업자세·동작의 결함, 작업방법의 부적절, 작업환경 조건의 불량 등) • 관리적 요인(관리조직의 결함, 규정·매뉴얼의 불비·불철저, 안전교육의 부족, 지도감독의 부족 등)				
재발방지 계획		(단기계획) 1. 기술적, 관리적 대책 2. 교육적 대책 (장기계획) 1. 기술적, 관리적 대책 2. 교육적 대책				
작성일: 20〇〇년 월 일 기관명: 〇〇〇 작성자: (직) 성명 (인)						

※ ‘산업재해조사표’ 뒷면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작성 및 산업재해조사표와 같이 보관

산업재해 재발방지 계획서 (예시)

○ 사업장 개요

재해자	성명	○○○	재해발생 장소	○○○구내 식당	상해종류 (질병명)	염좌
	직업 (직종)	조리원	산업재해조사 표 제출일	202 .00.00	상해부위 (질병부위)	좌측 발목
	발생일시	202 년 00월 00일 0요일 (00시 00분)				
발생 개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이동 중 계단에서 넘어짐 당일 우천으로 인하여 계단이 미끄러운 상태였음				

○ 재해발생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재해발생 원인	• 당일 우천으로 인하여 계단 미끄럼 구간 발생 • 노후화된 장화로 인하여 미끄럼방지 기능 상실 • 음식물 쓰레기(중량물)를 단독 운반하던 중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짐
재발방지 계획	(단기계획) 1. 기술적, 관리적 대책 • 미끄럼방지 기능이 우수한 장화로 교체, 미끄럼 경고 표지판 부착 • 계단에 논슬립패드 설치하여 미끄러짐, 넘어짐 사고 예방 • 작업 전 정리정돈 및 청소 실시 • 운반도구 구입 및 무거운 식자재 운반 시 2인 1조 운반 2. 교육적 대책 • 식자재 및 음식물 운반 시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작업, 수시로 바닥 청소하도록 교육 (장기계획) 1. 기술적, 관리적 대책 • 눈, 비로 인한 미끄럼 구간의 원인 제거를 위한 천막, 캐노피 등 설치하여 바닥 면의 물기 및 결빙 발생을 방지하여 넘어짐 사고 예방 2. 교육적 대책 • 정기안전교육 시 급식실 유사 재해사례 공유 및 재해에 관한 교육내용 편성 운영

작성일: 20○○년 월 일

기관명: ○○○

작성자: (직) 성명 (인)

※ ‘산업재해조사표’ 뒷면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작성 및 산업재해조사표와 같이 보관